

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68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8. 6. 16.
발 의 자 : 한 만 식 의원
외 5 인

1. 제 안 이 유

- '98. 5. 4일 경기도 조례 제2803호로 경기도 시·군 의회 의원 선거 구와 선거 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34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되어, 현행 4개 상임위원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중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 그동안 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현행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당선이 결정된 후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(안 제2조)
-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던 의석 배정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변경하며(안 제3조)
-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고(안 제16조)
- 의안회부에 있어서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각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함.(안 제20조)

3. 참 고 사 항

- 관련법규 :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등록) 중 "임기초에"를 "당선이 결정된 후"로 한다.

제3조(의석배정)제1항중 "의회운영위원회와"를 "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"로 한다.

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제2항중 "의회운영위원회와"를 "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"로 한다.

제20조(의안의 회부) 제2항중 "의회운영위원회와"를 "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등록)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은 <u>임기초에</u>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	제2조(등록)..... <u>당선이 결정된 후</u>
제3조(의석배정)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<u>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</u>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	제3조(의석배정)①..... <u>임위원회 위원장과</u>
②(생략)	②(현행와 같음)
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①(생략)	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①(현행와 같음)
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<u>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</u>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	②..... <u>위원회 위원장과</u>
③(생략)	③(현행와 같음)
제20조(의안의 회부)①(생략)	제20조(의안의 회부)①(현행과 같음)
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<u>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</u>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	②..... <u>위원회 위원장과</u>